

[서식 예] 장례식등의 방해죄

고 소 장

고 소 인 O O (주민등록번호: 1111111 - 11111111) OO시 OO구 OO길 OO

피고소인 △ △ (주민등록번호: 111111 - 1111111)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

고소취지

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예배를 방해한 사실이 있습니다.

고 소 사 실

- 1. 고소인은 ○○시 ○○길 ○○번지 소재 ○○교회 담임목사이고, 피고소인은 위 ○○교회의 장로이었던 자입니다. 피고소인은 위 교회의 재정장로로 재직당시 교회의 신축과 관련한 문제로 불화가 있어 재정장로직을 사임하였으나 이후에 도 계속적으로 교회의 일에 간섭하여 사사건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.
- 2. 급기야 피고소인은 20〇〇. 〇. 〇. 〇〇:〇〇경 일요 예배도중 강단으로 튀어나와 설교 중이던 고소인에게 "비리목사는 물러나라"등 소리를 지르고 예배당 마이크를 빼앗아 교회신축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교인들의 만류를 뿌리치며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예배를 방해하였습니다.
- 3. 따라서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다시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엄중히 요청하였으나 피고소인은 막무가내로 대화가 통하지 않고 있습



니다. 따라서 이 후에도 계속적인 예배 방해 행위가 일어날 소지가 많아 부득이 이렇게 고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.

첨 부 서 류

- 1. 비디오테이프
- 1. 목격자진술
- 1. 현장사진

20 이 이 년 이 일 이 일

고 소 인 ㅇ ㅇ ㅇ (인)

○ ○ 경 찰 서 장(또는 ○ ○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) 귀 중



| 제출기관 | 범죄지, 피의자의 주소,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, 검찰청 | 공소시효 | ○년(☞공소시효일람표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|--------------|
| 고소권자 | 피해자(형사소송법 223조) (※ 아래(1)참조) | 소추요건 | |
| 제출부수 | 고소장 1부 | 관 런 법 규 | 형법 158조 |
| 범죄성립 요 건 | 장례식, 제사,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때 | | |
| 형 량 | · 3년 이하의 징역 · 500만원 이하의 벌금 | | |
| 불기소처분 등에 대 한 불복절차 및 기 간 | (항고) ・근거: 검찰청법 10조 ・기간: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(검찰청법 10조4항) (재정신청) ・근거: 형사소송법 제260조 ・기간: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(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) (헌법소원) ・근거: 헌법재판소법 68조 ・기간: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,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(헌법재판소법 69조) | | |

※ (1) 고소권자

(형사소송법 225조)

- 1.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
- 2.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, 자매. 단,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

(형사소송법 224조)

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[단,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"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(고소의제한)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."고 규정함]